

# 해외 경쟁 정책 동향

본 협회 조사부

## 미국

### 법무부, 3만 통 이상의 Public Comment 검토 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화해안 수정

화해안에 대한 이번의 수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고 소비자가 보다 경쟁적인 소프트웨어시장에서의 이익향유를 확보할 수 있는 화해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반트러스트국에 제출된 3만 통 이상의 공공의견(public comment)을 검토한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화해안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수정을 하였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 이번의 수정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법행위에 충분히 대처하고 장래 이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보다 경쟁적인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이익향유를 할 수 있도록 화해안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발표하였다. 화해안에 찬성하고 있는 주 당국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정에 동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밤 늦게 법원에 제출

한 별도의 문서로서 법원에 의한 화해안의 최종명령서로 등록을 지지하는 메모란덤, 공공의견에 대한 상세한 회신, 화해안의 수정에 관한 메모란덤, 동시에 법무부 및 화해에 찬성하는 주 당국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수정된 화해안에 관한 조항을 제출하였다. 이번의 제출은 2002년 3월 6일 코린·코라고테리 판사가 행하게 될 심문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화해안은 공소심에서 독점유지행위로 인정한 행위의 금지를 포함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들웨어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배제하고 경합하는 미들웨어 제품이 개발·보급되는 소망된 상황을 가져다 주는 적극적 의무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언급했다.

「이번의 화해안은 공소심이 인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충분하고도 완전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반트러스트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를 위하여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금일 발표한 수정 내용은 단지 효과적인 화해를 다시 개선한 것이다」라고 찰스 A 제임스 반트러스트 국장은 언급했다.

화해안이 법원에 의해서 승인되면 1998년 5월에 제소된 소송이 해결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 화해안이 지방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고 공소법원에 의해서 유지될 위반행위에 대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대응책으로서 1996년 제소 이후 양 법원에 의한 사건의 실질적인 매듭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공소심이 인정한 법적 책임은 Operating System에 있어 독점에 대한 위협이 되는 미들웨어의 출현을 방해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수한 행위를 기소한 시정조치안에 한정된 것이다.

본 건에 대한 일반으로부터 주목되는 점은 법무부가 각종 의견을 전자메일에 의해서 받아 보았는데 많은 경우 짧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공공의견은 금일 법원에 제출되었고 또한 2002년 3월 4일까지 법무부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었다.

상세하게 제시된 의견 중 47통은 2002년 2월 15일에 게재되었다. 법무부는 모든 의견을 검토 분석한 후 광범위한 문서로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상세하고 본질적인 의견의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자로부터 제출된 것이다. 이들 경쟁업자는 미들웨어 등 기타 각종 소프트웨어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법무부는 회신에서 설명하듯이 제시된 시정조치안의 대부분은 법원이 인정한 위반행위의 범위 밖이라는 것이며, 또는 소비자보다는 개개 기업의 이해에 관계되는 것이었다.

수정안의 내용은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 화해안의 각 조항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은 한 가지 예외를 빼고는 용어를 개선하고 화해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양 당사자가 공유코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 당사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을 확보하고 또한 다른 중요 조항이 무효화 되도록 해석되지 않도록 APIS(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의 정의를 명확히 함(제3조D 및 정의 IV-A) ;
- 「호환성(interoperate)」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적 어휘 삽입(제3조E) ;
- 각종 제3자가 경합제품 때문에 불이행조항을 설치하는 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평하게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적 조건의 삽입(제3조 H.2) ;
-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데스크탑 상의 특성의 제품의 형상을 당해 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나 아니냐에 따라 변경되지 않

도록 하고 또한 어떠한 변경도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문안 삽입(제3조H.3) ;

· 특정의 제3자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인정 조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조건의 삭제(제30조I.5) ;

·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들웨어에 대한 정의조항이 양 당사자에 의해서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또한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되지 않도록 동 정의를 수정(정의 VII.J) ;

· 「적시에 (Timely Manner)」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협의로 적용되지 않도록 동 정의를 명확히 함(정의 VII.R)

「마이크로소프트는 중대한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동 위반행위는 신속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화해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반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미들웨어에 대한 경쟁적인 조건을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무부가 심중히 검토한 후에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의 수정은 공공의견(Public Comment)에서 제시된 각종 우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이다」라고 Deborah P. Majoras 반트러스트국 차장은 언급했다.

법무부는 본 건에 대한 공공의견을 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아끼지 않은 국민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반트러스트법 집행 과정에 일반인의 광범위한 참가를 환영하며 중요사건에 대한 이번과 같은 일반인의 관심이 크

게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2002. 2. 28. 법무부 발표

## 일본기업, 동 미국자회사 및 일본인 임원에 대해 소추 방해로 기소

로스엔젤레스 연방대법원은 일본의 탄소섬유회사와 동 캘리포니아 Menlo Park 소재 미국 자회사 및 일본인 임원을 탄소섬유산업에 대한 가격카르텔 혐의 수사에 따른 소추를 방해했다 하여 기소하였다고 법무부가 발표하였다.

로스엔젤레스 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 내용에 따르면 일본 동경에 소재한 동방테낙스(구 동방레니온)의 미국 자회사인 Toho Carbon Fibers Inc. 및 동방 테낙스의 임원인 「다케다 난지게인」은 서면법 제1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 1999년 1월에 문서제출을 명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죄상을 옹폐 하였다는 것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동방테낙스, Toho Carbon Fibers Inc. 및 다케다는 대법원에 의한 제출명령문서의 접수를 방해하고자 증거서류를 극비리에 Menlo Park의 Toho Carbon Fibers Inc. 본사에서 동경의 동방 테낙스 본사에 송부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미국의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두고 반트러스트 수사를 방해하는 자를 적극 소추할 것이다」라고 찰스 A.제임스 반트러스트 국장은 언급했다.

동방테낙스는 경량 및 고강도의 특질을 갖고 있으며 길고 얇은 리본과 같

은 단섬유로 이루어진 중합흑연 원료인 탄소섬유를 제조하고 있다. 동방테낙스가 100%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Toho Carbon Fibers Inc.는 미국에서 동방테낙스제 탄소섬유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탄소섬유는 스포츠용품 산업기자재 및 항공우주제품에 있어 강하면서도 경량의 서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라 불리는 제품으로서 주로 보강재로 사용하고 있다.

동방 테낙스, Toho Carbon Fibers Inc. 및 다케다에게는 법인인 경우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개인에 대해서는 10년의 금고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프리프레그 산업에 대한 심사는 워싱턴 D.C.의 반트러스트국 전미형사집행과 연방수사국 신디에고 사무소 및 국방형사수사국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2. 3. 19.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

### FTC · DOJ 등, 대학학자금 사기 방지법에 의한 연차보고서 제출

미국에서는 매년 백만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1969년이래 4년제 대학의 교육비는 600%나 상승하였다. 그래서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교육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기나 학자금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2000년 11월

5일 의회는 대학학자금 사기 방지법 (the College Scholarship Fraud Prevention Act of 2000)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 정부기관들은 학자금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재정지원 (financial aid)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형을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고,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와 연계하여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이하 "ED")가 이를 관할하고 있다. ED는 웹사이트를 통해 학자금 사기에 관한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연방법무부장관, 연방거래위원장 및 교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소비자에 대한 재정보조 서비스시장에서의 사기행위에 관하여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보고서는 법이 제정된 지 18개월 후인 2002년 5월 1일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FTC, ED 및 법무부(이하 "DOJ")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법에 따라서, ED는 웹페이지를 개설했고, 그 밖에도 여러 방면에서 소비자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FTC는 이미 1996년에 학자금 사기와 관련된 웹페이지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해 놓고 있으며, 학자금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집행과 소비자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ED와 FTC의 웹사이트는 서로 링크되어 있다. ED에서는 학생과 그 부모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상담원, 대학의 재정보조 담당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및 안내책자나 포스터 등과 같은 인쇄물 등을 통해 캠페인을 하고 있다. ED에서 발간

되는 자료들은 사기에 대한 정보와 연방 차원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내용에 담고 있다.

FTC의 캠페인에는 학생들과 그 부모들, 교육자 및 재정지원 담당자들을 돕고 학자금 사기를 피하기 위한 소비자 교육 자료, 웹사이트, 소책자 시리즈, 포스터 등의 제작이 포함된다. 웹사이트에는 학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 및 소비자들이 학자금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소책자와 포스터 등에는 이 웹사이트의 정보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학자금 사기 방지책에 관한 조언도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배포하기 위해, FTC는 출판사 등과 연계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이 법의 지침에 따라서, 연차 보고서는 법 제정 이후 학자금 사기 사고의 성격에 관한 조사와 발생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FTC의 소비자 신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신고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기 사건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소비자들이 FTC와 그 밖의 200개가 넘는 연방, 주, 지역 또는 국제적인 법집행 기관들에 신고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못하다. 어떤 소비자들은 직접 당사 회사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법집행 기관에 신고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자금 사기는 인터넷을 통하여 소액으로 행해지기도 하는데, 이처럼 소액의 사기에 대해서는

E U

유럽위원회, FIFA에 대한 조사 종결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이하 "FIFA")과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유럽위원회는 FIFA가 정한 프로 선수들의 소속사(agent)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조사절차를 종결키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위원회의 초치는 FIFA에서 문제된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취해졌다. FIFA는 선수 및 클럽들로 하여금 FIFA가 승인하지 않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유럽위원회에 제소되었다.

그러나 그 후 FIFA는 유럽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유럽위원회는 프로선수들에 대한 FIFA의 통제가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한, 새로운 규정이 선량한 풍속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가장 경쟁제한적인 규정이 제거됨에 따라, 프로선수들 소속사의 도덕적 기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FIFA에 의한 허가제는 필요하다"고 마리오 몬티 경쟁위원은 말했다.

몇 가지 이유로 FIFA가 제소되면서, 유럽위원회는 선수들의 소속사에 대한 FIFA 규정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를 통해 유럽위원회는 1999년 10월 19일에 FIFA측에게 이의 공문을 보냈다.

유럽위원회는 필요한 자격이나 기술

소비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편 ED도 역시 학자금 사기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FTC에 비하면 신고접수 건수는 적은 편이다.

접수된 신고를 평가해 보면, 사기의 성격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기에는 유령회사에 의한 텔레마케팅 사기에 의한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전히 이런 유형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메일이나 구두를 이용하는 재정지원 컨설팅 회사에 의한 사기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기의 패턴이 변한 것은 FTC의 학자금 사기 방지 프로그램이 유령회사에 의한 학자금 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FTC는 이미 학자금 사기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96년 가을부터 "학자금 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11개의 회사와 30개의 개인들이 현재 연방 법원의 명령을 받아 허위·가장 행위를 못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법원의 명령은 피고들로 하여금 영원히 학자금 서비스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원의 명령 중 상당수가 피고들이 텔레마케팅 활동을 하려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560,000달러가 넘는 자금이 소비자에게 환급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방재무부가 이를 환수하였다. 또한 학자금 사기를 행한 자는 DOJ에 의해 형사 기소된다. FTC와

ED는 새로운 사기 유형을 적발하기 위해 소비자신고 데이터베이스를 계속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0년 11월 이후 DOJ가 다루었던 학자금 사기 사건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루이지애나의 연방 장학프로그램 담당자와 수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기금을 기만적으로 받으려고 한 경우
- 테네시 네쉬빌에 있는 대학의 재정 지원 책임자가 자기 자신과 허위 등록된 학생을 위해 재정지원서를 작성한 경우
- 남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출 지원서에 자신의 결혼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워싱턴 D.C.의 일련의 학생들이 허위의 공동의 정보를 가지고 대출 신청을 한 경우
- 북텍사스의 학생이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고자 한 경우

학자금 사기는 여러 연방기관과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모든 법령상의 내용들을 DOJ에서 인지하여 이를 각종 학자금 사기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DOJ는 2000년 11월부터 각종 학자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지휘하고 있다. DOJ는 원칙적으로 학자금 사기를 단지 학생이나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기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DOJ와 FTC는 앞으로도 공조를 통하여 법집행을 계속할 방침이다.

2002. 5. 8. 연방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을 갖춘 자연인이나 법인이 프로선수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 내지는 제한하는 FIFA 규정은 반경쟁적 합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FIFA는 그들에게 고액의 예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에 FIFA는 2001년 3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규정을 2000년 12월 10일에 채택하면서, 문제된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규정은 그 후 2002년 4월 3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프로선수들에 대한 접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새로운 규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더 이상 예탁금으로써 접근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 예탁금 제도는 최근에 책임보험으로 대체되었다.

선수들의 소속사가 되고 싶은 자는 이른바 multiful-choice test를 통과해야 한다. 테스트 날짜와 테스트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하다. 면허를 얻기 위해서, 지원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투명성, 정직, 수익의 공정한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위원회는 선량한 풍속, 전문적 기준의 향상 및 자격 미달인 에이전트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려는 FIFA의 목적이 경쟁의 고려요소들에 우선한다고 보아서 제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들은 향후 FIFA에서 정한 규정이 없더라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회원국들이 프로선수들을 규제하거나 소속사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규제(self regulation)를 한다면, FIFA의 규정은 꼭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럽위원회가 FIFA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

2002. 4. 18. 유럽위원회

**유럽위원회,  
항공사 Air France와 Alitalia의  
협력행위를 위법으로 추정**

2001년 11월 12일 에어프랑스와 알이탈리아는 그들간의 협력행위에 관한 합의를 유럽위원회에 신고했고, 「항공운송 분야에 있어서 EU조약 제83조제3항의 적용에 관한 위원회 규칙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5(3) of the Treaty to certain categories of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 in the air transport sector)」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1. 합의의 주요내용**

양사간 협력에 관한 합의와 그 행사에 관한 합의는 알이탈리아가 Skyteam Alliance의 회원사가 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이 협력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파리공항과 로마공항에 기반을 둔 유럽의 복수지역 중심(multi-hub system) 공항으로서의 기능 형성
  - 항공기 좌석 공유나 공항 라운지 공유 등의 승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향상
  - 기타 화물 운송, 기술 정보, 승무원 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 에어프랑스와 알이탈리아는 세계적

인 그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유럽의 중심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 제휴의 목적으로서, 이러한 협력에 의해 에어프랑스와 알이탈리아에 의해 운항되는 프랑스-이탈리아 노선은 모두 하나로 통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내용을 판단하려면 여객운송과 관련되는 기본 협력행위와 보다 강화된 고도(enhanced)의 협력행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먼저 승객운송과 관련된 일반적인 협력으로는, 항공기 좌석 공유, 네트워크 및 항공로 협력, 요금 및 판매에 관한 협력 등이 있다. 또한 여객운송과 관련된 통합을 위한 협력에서는, 당사자들은 그들의 비행 횟수 및 항공기의 크기, 향후 4년간 여객 운송량의 배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도 화물운송에 관한 협력과 공항 라운지의 공동 활용 등 지상에서의 업무에 관해서도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에어프랑스와 알이탈리아는 자신들의 협력행위에 관한 합의를 통해서 4가지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서비스 향상과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킨다. 에어프랑스는 파리공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알이탈리아는 로마공항에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서로 보완적이다. 그리고 에어프랑스의 네트워크는 유럽, 북아메리카, 극동아시아, 사하라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알이탈리아의 네트워크는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세를 보이므로 상호 보완적이다. 또한 복수지

역 중심(multi-hub) 시스템은 단일지역 중심(single-hub) 시스템보다 우수하다. 즉, 후자는 운송 밀도의 최적화나 최종 목적지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전자는 여러 지역의 분산을 통해서 운송량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고, 최종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기착지가 여러 군데 있음으로써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며 승객 1인당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밀도있는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에어프랑스와 알이탈리아의 협력에 관한 합의는 고객들에게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될 것이다. 승객들은 보다 많은 최종목적지와 중간기착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에어프랑스는 알이탈리아의 네트워크를 통해 110개의 새로운 목적지에 취항할 수 있으며, 알이탈리아는 에어프랑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21개의 새로운 목적지에 취항할 수 있다. 또한 제휴서비스를 통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승객들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양사의 frequent-flyer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양사의 비행 스케줄을 최적화함으로써 승객들에게 항공기 탑승에 있어서 보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탑승 예약, 체크 인, 수하물 운송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셋째, 양사간의 협력을 위한 합의는 에어프랑스와 알이탈리아에게 합의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고, 그 이외의 불필요한 제한은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은 제휴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중요하다 주장한다. 왜냐하면 에어프

랑스와 알이탈리아는 항공운송 시장의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에 따라 유럽지역에서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에어프랑스나 알이탈리아는 모두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다른 경쟁 항공사들은 이미 각각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이번 협력행위만이 제휴로 인한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확대나 신속한 연결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multi-hub 시스템이 가장 적절하며, 항공사간의 강한 협력 없이는 이러한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다. 한편 보다 강력한 협력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프랑스/이탈리아간 항로 통합은 제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하다. 통합항로의 스케줄과 항공운송의 타이밍, 비행 빈도 등을 최적화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스케줄을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분배를 포함하는 조인트벤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결국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협력행위를 하는 목적은 당사자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여객운송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네트워크의 범위나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항로의 연결에 있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넷째, 협력행위에 관한 합의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에어프랑스와 알이탈리아와의 협력으로 프랑스/이탈리아 항로가 통합되거나 네트워크가 통합됨으로써 경쟁이 제

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제휴사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으므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이탈리아 항로 통합과 관련해서는, 거의 70여개의 항로가 이들 중 하나의 항공사에 의해 운항되고 있으며, 오직 6개의 항로만이 두 항공사가 중복적으로 취항하고 있으므로, 양사간의 제휴로 프랑스-이탈리아 노선에서 경쟁이 제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프랑스-이탈리아 항로 중에서 가장 주요한 노선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은 상호간의 경쟁은 하지 않지만, 다른 항공사와의 경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선들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진입가능성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고 당사자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프랑스-이탈리아 노선에 있어서는 현실적 및 잠재적 경쟁자들이 존재하므로 여전히 경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결론

유럽위원회는 이 문제된 합의가 유럽조약 제81조제1항의 카르텔 합의에 해당되며, 동조 제3항의 일괄예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응의 추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운송 분야에 있어서 EU조약 제83조제3항의 적용에 관한 위원회 규칙 제5조에 의해 유럽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게 에어프랑스와 알이탈리아와의 협력을 위한 합의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발송할 것을 당사자들에게 요청했다. 동 규칙 제5조에서는 위원회가 규제를 하기 전에, 이에 관한 초안을 공표하여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어도 30일 이상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알린 다

음, 위원회의 입장을 확정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 5. 8. 유럽위원회

## 독 일

###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연방카르텔청의 망이용료 통제 권한 인정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에너지 회사 RWE의 지역 에너지 공급업자인 envia Energie Sachsen Brandenburg 주식회사(이하 envia)는 망(network)이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경쟁당국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방카르텔청장인 Ulf Böge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과도한 망이용료 부과와 관련된 경쟁법상의 조사절차에서 중대한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로써 연방카르텔청은 그동안 주로 애용해 오던 비교시장 이론과 더불어, 전기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망 제공자의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2002년 1월부터 연방카르텔청은 10개 회사들을 상대로 그들의 과도하게 높은 망이용료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이었다. 지역 에너지 공급업자인 envia사도 이들 중 하나에 속해 있었다. 당초 연방카르텔청은 조사절차의 일환으로 망 제공자들에게 일련의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여기에는 이용료의 산정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었는데, 몇몇 회사들은 이와 같은 연

방카르텔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고등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 경쟁당국이 비교시장 이론과 과도한 가격책정에 관한 통제를 모두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왜냐하면 전기 공급업자의 자연독점으로 인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쟁적인 가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시장 이론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비교시장 이론과 함께 또는 이 이론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이용료 규제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2. 5. 2. 독일 연방카르텔청

## 캐나다

### 경쟁국, 전화번호안내 회사에 오인유발 표현을 금지하도록 명령

경쟁국(The Competition Bureau)의 경쟁위원들은 지난 5월 10일 전화번호안내 회사가 자신의 전화번호부를 판매할 때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억제하도록 하는 동의명령을 내렸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충분한 광고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광고비로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가치있게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라고 Raymond Pierce 경쟁 부위원은 말하면서, "동의명령을 통해 취해진 조치는 British Columbia(이하 B.C.) 지역의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B.C. 지역의 Kamloops와 Okanagan Valley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

자들은, Western Phone Directories사와 같이 B.C.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전화번호부의 출판 날짜, 배포할 수량 및 배포지역에 관한 약속을 어겼다고 신고했었다.

경쟁국의 동의명령에 따르면, Phone Directories Company Inc.는 인터넷 등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다음의 내용과 관련하여 오인 유발적 또는 허위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다.

- 일정 지역에 배포하기 위해 발간된 모든 전화번호부의 수량
- 전화번호부가 발간되고 배포되는 기간
- 전화번호부가 배포될 지역
- 전화번호부의 배포 정도

이와 함께, 경쟁국은 Phone Directories Company Inc.에게 행정벌로서 5천 달러를 부과했다. 이 명령은 앞으로 10년간 유효하다. 이 회사는 1998년부터 B.C. 지역에서 전화번호부를 발간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 다른 사업자들이 경쟁국에 신고를 하여 경쟁국은 2001년 8월부터 정식 조사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캐나다 경쟁국은 경쟁법을 포함하여 4개의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관청이다. 경쟁국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캐나다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02. 5. 10. 캐나다 경쟁국